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20. 12. 2.(수) / 총 4매(본문4)	
<b>담당 부서</b> 모빌리티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박준상, 사무관 이보언, 주무관 권민희 • ☎ (044) 201-3819, 3822	
<b>보 도 일 시</b>	2020년 12월 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-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위해 안전관리 강화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수능이후 취약기간('20.12.~'21.2.)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,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- 렌터카는 '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, 매년 10%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.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.
  - \* 무면허 사고건수/사망자수 : '17년 353건/8명 → '18년 366건/3명 → '19년 375건/4명
  - \* 연령별 : 성년 191건('15) → 234건('19), 22%↑ / 미성년 83건('15)→141건('19), 69%↑
-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, 이용할 수 있도록 △학생 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, △명의도용·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, △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.

### 《 학생안전 특별기간 관리강화 》

- 먼저, 수능이후 취약기간('20.12.~.21.2., 100일간) 동안,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.

-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**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·확인**하여 대여하도록 하고,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·점검한다. 더불어 지도·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.
- 또한,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,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.
-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여 **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** 실시한다.
  - 우선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, 지자체,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(‘20.11. 2개 업체)을 실시하고, 향후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한다.
- ※ ①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여부, ② 자동차 정기검사 및 차량·타이어 관리상태 등 안전 점검을 실시 → 위반사항 발견 시 제재 처분 등 강력히 조치

### 《 명의도용·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 강화 》

- 렌터카 대여를 위한 **명의 대여·알선**을 금지·처벌하고, 업체의 **운전자격 확인 책임**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.
- ‘21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,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,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**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**

- 또한,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 원(최대)에서 500만 원(최대)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 (또는 1월초)에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
- 이와 더불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.

### 《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》

-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로 하여금 **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**하고, **안전 점검도 실시**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.
- 전복·화재사고, 사망 2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·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고,
-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, 관계 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.


\* 안전점검 대상(현행) : 사망 1명,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버스·택시

### 《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 개선 》

- 이와 더불어, 렌터카 업체의 **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산**하기 위해 **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개선**도 추진한다.
-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도 추가하여 임차인이 제시한

운전면허증과 비교·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렌터카 업체에서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개선 등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박준상 과장은 “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되어 교통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면서,
  - “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 공정투명 정보제공 지킴이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이보연 (☎ 044-201-38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